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립외교원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외교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내 교육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.

## 3. 주요내용

○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기간의 유연한 운영 확보(안 제10조 제1항)

1)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.

- 단, 현 시행령은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“1년 이내로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,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한이 있음.

2) 현행 시행령상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“1년 이내로” 한 것을 “교육목적상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기간”을 둘 수 있도록 함.

- 통상의 정규과정은 약 11개월간 진행되나, 교육목적상 필요시, 약 3개월의 추가적인 교육 및 평가기간을 가지게 하고자 함.

3) 정규과정 교육기간의 유연성 확보시,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 신규 도입 이후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생이

있는 경우, 외교관으로서 임용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 진행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##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원장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정규과정 입교 등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조(정규과정 입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<단서 신설>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 <u>.단, 원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 |
| ③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외교부 교육운영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| (02) 3497 - 7726 |